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9. 9 선고 2020나66556(본소), 2020나66563(반소) 판결

[대여금 ·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이행청구]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A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권, 강태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민성

변 론 종 결 2021. 6. 3.

판 결 선 고 2021. 9. 9.

제1 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9. 9. 선고 2019가단219049(본소), 2019

가단219056(반소) 판결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10. 6. 10. 접수 제3864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고, 항소취지에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반소에 관한 항소취지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는 본소에 관한 부분만 항소하였다고 볼 것이니,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본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9 내지 17행의 2)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본소 부분에 관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갑1(차용증, 갑7의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피고의 서명이 피고에 의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백지문서에 피고의 서명만을 먼저 받은 후 D가 그 내용을 보충하였다고 주장하나 갑7의 일부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는 2018. 11.

13. 제출한 ‘조정신청’이라는 서면에서 ‘피신청인은 신청인하고 몇 번 본 것이 전부이며, 강원도 토지만 신청인에게 이전되면 피신청인이 써준 것은 전혀 문제삼지 않고 소각한다하는 말을 신청인에게 듣고 작성해준 사실이며’라고 기재하여, 피고 자신이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0. 6. 10.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이자 월 2%로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0.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정민, 판사 김정현, 판사 박재성

【별지】**1. 토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대지 76㎡

2. 건물

서울특별시 구로구 의 지상

벽돌구조 철근콘크리트자중

4층 다가구주택(5가구)

1층 45.65㎡

2층 45.65㎡

3층 45.65㎡

4층 19.96㎡

